

대전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나218054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나21805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2 선고 2021가소1285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강현우, 이지윤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24. 7. 23.

판결 선고 2024. 11. 19.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2. 선고 2021가소128548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8. 19. 피고와 강원 홍천군 D 지상 태양광발전소 일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9. 3.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량	100KW급(최종 용량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자재	모듈(한화 450W) 인버터(현대)
공사기간	개발 및 신축허가 후 6개월 이내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결제	전체 현금지급조건(기업은행 ○○○-○○-○○○-○○○ 주식회사 C)계약금 1,000만 원 계약 당일 내잔금 1억 원 전기사용검사 완료 후 3일 이내
특약사항	가. 한전선로개통 비용 별도다. 구조보강 발생 시 비용 별도다. 잔금은 대출로 진행
기타	계약의 상세내용은 설계도면과 별도로 작성한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계약일반조건

제3조(업무의 협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내용)

1. 피고는 계약서 및 설계도면, 계약내역서에 의하여 제작을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설계도면 및 계약내역서에 의거 공사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작 설치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1.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며 제작, 시공,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공사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부지현황에 따른 설계의 변경, 인허가)

1.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 시 설치현장의 부지현황에 따른 설계의 변경이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 ①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피고와 서면으로 합의를 득한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 ② 설계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최종 변경 안은 준공 시 원고에게 제출토록 한다.
 - ③ 피고는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추가되지 않는 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지속할 수 있고, 설계변경 후 7일 이내(우편발송일 기준)에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 및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물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원고의 명의로 진행할 수 있고,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행정청이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 및 불허가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며, 인·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및 불허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원고의 계약해제)

1.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공사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③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원고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 해지(해제)된 것으로 한다.

3. 원고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E 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2020. 11. 16. 홍천군수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20. 12. 14. 태양광발전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21. 1. 19. 한전 외선공사비 9,487,1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21. 2. 25. 피고 측 담당자에게 "1. 태양광 설치계약 변경 위반, 2. 태양광 설치가격 위반, 3. 모든 책임은 피고에 있음, 4. 한전불입금 9,487,1000원 책임은 피고에 묻겠음. 태양광 계약 위반임을 태양광 공사 무효, 계약금 돌려주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계약금 일천만원 입금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 측 담당자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문자내용에 대한 우선답변 드립니다. 1. 계약변경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100kw 공사에 대한 변경 없습니다. 또한, 북쪽면부터 용마루까지 설치토록 도면 공유드렸습니다. -공사와 추후 a/s부분도 계약서에 따라 설치 및 유지모수 진행됨을 안내 드렸습니다. 2. 계약가격 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특약에 별도로 기재된 항목 외에 증액요청 없습니다. #계약서 명시 특약사항#가. 한전선로개통비 별도 나. 구조보강 발생 시 비용 별도 다.잔금은 대출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답장하였다.

라. 원고 측은 2021. 7. 19. 피고에게 별지 내용증명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공사공정표를 제출하거나 현장대리인의 선임 통보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사다리, 지붕형 발판 등에 대한 공사비를 원고의 부담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면서 공사수행을 거절하는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의무가 아닌 공사를 원고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서 착공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공사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 될 때'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며,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9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한전 외선공사비 9,487,1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 란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 및 신축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쳐야 하는바, 여기서 '개발 및 신축허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2020. 11. 16. 홍천군수로부터 받은 발전사업허가임을 전제로 이미 약정한 공사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미 종기마저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법령상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공사계획인가→준공검사 사용전검사→한전 등과의 전력수급계약→사업개시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서 공사기간 란의 '개발 및 신축허가'는 발전사업허가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및 공사계획인가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공사계획인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물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원고의 명의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인 2020. 12. 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개정되어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의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점검통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 및 공사계획인가를 위해서는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공사대금 증액을 거부하면서 종전 공사대금으로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반영한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공사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발 및 신축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조차 못한 이상 피고에게 공사공정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대리인의 선임 통보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준호

판사황성욱

판사김영호

별지